

수입P/L신고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

1. 수입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에게 정확한 신고자료를 제공하고, 또한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 - 무역서류(송품장, 선하증권, 포장명세서)
 - 필요한 경우, 품목분류에 필요한 카다록 등
2. 선사(항공사), 포워더,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세관에 정확한 화물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, 정확한 화물정보와 통관계획을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- 적하목록, 보세운송신고필증 등
3. 수입하는 물품이 가격신고대상일 경우 정확한 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-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
 -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
4. 수입하는 물품이 별도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정보를 수입신고인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 -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일 경우,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건 확인서류 구비 및 수입요건 승인정보의 제공
 - 관세법, 조약,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일 경우, 원산지 증명서 구비 또는 면제여부를 신고인에게 제공
 - 관세의 감면 또는 분납,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, 관세감면(분납)/용도세율적용 신청서 기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고인에게 제공
5. 수입P/L신고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수입신고자료를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인)